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75 물환경보전법위반

피 고 인 1. 심재구 (480903-00000000), 전 0000 대표
주거 00 00 0000 00000 00(000)
등록기준지 00 00 000 000-00

2. 0000 0000
소재지 00 00 00000000 00(000)
대표이사 000

검 사 000(기소), 000(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00(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 000
법무법인 0(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00, 000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0000 0000(변경전 상호 0000 0000, 이하 '0000'이라 한다)은 1997. 2. 17. 인천 00 000 000000 00에서 폐수수탁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심재구는 위 0000의 실제 운영자였다.

가. 피고인 심재구

- 1)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위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위 0000 사업장에서 위탁받은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스팀 응축수 배관과 냉각수 배관을 통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폐수가 유입되는 예열기와 연결된 판상형 열교환기를 위 스팀 응축수 배관, 냉각수 배관에, 폐수가 유입되는 저비점 분리기를 위 냉각수 배관에, 폐수가 유입되는 유량조정 시설을 스팀 응축수 배관에 각각 연결함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관한 물환경보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6. 위 0000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설치된 위 스팀 응축수 배관을 이용하여 폐수 불상량(COD 9,408.1mg/L, 기준치 130 이하)을, 위 냉각수 배관을 이용하여 폐수 불상량(COD 31,159.9mg/L, 기준치 130 이하)을 각 배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위 0000 0000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설치된 위 스팀 응축수 배관을 이용하여 폐수 불상량(COD 38,214.3mg/L, 기준치 130 이하)을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사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0000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위 심재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방지사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가. 1)항 및 나. 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심재구가 ① 폐수가 유입되는 예열기와 연결된 판상형 열교환기를 스팀 응축수 배관, 냉각수 배관에(별지 도면¹⁾ 표시 ①, ② 배관), ② 폐수가 유입되는 저비점 분리기를 위 냉각수 배관에(별지 도면 표시 ③ 배관), ③ 폐수가 유입되는 유량조정시설을 스팀 응축수 배관에(별지 도면 표시 ④ 배관)에 각각 연결하는 방법으로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이른바 비밀배관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배관이 설치되었거

1) 별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배관 중 ⑤ 배관은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배관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나 위 각 배관들이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되도록 하는 비밀배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먼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배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예열기로부터 나오는 ㉠ ‘폐수 배관’이 연결된 판상형 열교환기에 ㉡ ‘스팀 응축수 배관’, ㉢ ‘냉각수 배관’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판상형 열교환기에는 예열기로부터 나오는 ㉠ 폐수 배관과 ㉡ 스팀 응축수 배관만이 연결되어 있고 ㉢ 냉각수 배관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 냉각수 배관은 판상형 열교환기와 연결되어 있는 ㉡ 스팀 응축수 배관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상형 열교환기를 통하여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가 배출되려면 예열기로부터 ㉠ 폐수 배관을 타고 나온 폐수가 판상형 열교환기를 통하여 ㉡ 스팀 응축수 배관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0000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상형 열교환기(스팀 응축수에 있는 열기를 폐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이고, 스팀 응축수와 폐수가 서로 교차되는 판에 흐르는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를 제작한 업체 000 000는 0000에 공급된 판상형 열교환기는 유량을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분해하여 판 개수를 조절할 수는 있으나 배관을 통해 유량을 열교환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0000에 판상형 열교환기를 납품한 이후 수리나 개조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한다(증 제24-1 내지 24-4). 또한 피고인 측은 판상형 열교환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약 5년 전부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판상형 열교환기에 폐수를 넣는 배관을 분리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0000의 판상형 열교